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장정순 의원 대표발의)

용 인 시 의 회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22 - 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4.

발 의 자 : 장정순 의원

☐ 구 분 : 일부개정

☐ 개정이유

-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함

☐ 주요내용

-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(안 제3조제7호)
-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(안 제4조)

☐ 개정조례안 : 별첨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☐ 관계법령 발췌서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, 제35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

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, 제4조의2를 제6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시설)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3조제7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9조제3호 및 제4호 중 “제6조”를 각각 “제8조”로 한다.

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(제6조 관련)”을 “(제8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제목 중 “(제6조 관련)”을 “(제8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제목 중 “(제6조 관련)”을 “(제8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입 안 자
문화복지위원회	장정순 의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·운영) ①·② (생 략)	제2조(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 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실, 상담실, 자 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제3조(기능)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7.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제3조(기능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 업촉진 프로그램 제공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<u>제4조 ~ 제6조 (생 략)</u>	<u>제4조(시설)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 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 료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하고 제3조제7호와 연계한 휴게음식 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u> <u>제5조 ~ 제8조 (현행 제4조부터 제6 조까지와 같음)</u>

제9조(위탁계약에 관한 사항) 시장은

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,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6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시,

사전 보고 및 시장 승인 절차 준수

4.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

제18조에 따라 위탁 사무와 관련

하여 지원된 예산 및 이 조례 제6

조에 따라 부과·징수한 이용료의

목적 외 사용 금지

5. (생략)

제12조 (생략)

제9조(위탁계약에 관한 사항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8조-----

4. -----

----- 제8조

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[별표 1]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
이용료 (제6조 관련)

[별표 2]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
이용료 감면 (제6조 관련)

[별표 3]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
이용료 반환 (제6조 관련)

[별표 1]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
이용료 (제8조 관련)

[별표 2]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
이용료 감면 (제8조 관련)

[별표 3]

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
이용료 반환 (제6조 관련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

· 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(이하 “건강가정사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
④ 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

제3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

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